서울특별시 금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9월 14일 행 정 재 경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9월 5일, 이인식, 정재동, 도병두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9월 5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4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
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9월 14일)
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이인식 의원)

가. 제안이유

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 및 정책수립(안 제3조 및 제4조)
-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(안 제5조)
-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(안 제6조)
- 교육 및 홍보와 업무협조(안 제7조 및 안 제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최근 농수산물의 방사능 관련 불안감이 대두됨에 따라, 관내 영유아
 및 학생급식의 안전 보장을 위한 조례의 제정 취지는 시의적절하고
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
- 현 급식 식재료 검사체계에서 자치구 차원의 검사 진행시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검사와의 중복 문제 및 자치구 표본 검사에 대한 실효성 의문 제기에 대해서 다소 의견이 분분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**답변요지**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